

272

4
22

자 체 통 제		지방행정참사 기안처	총림과 성만역	전화번호 420	근거서류접수일자
산림 팔임	총림 파장	산림 국장	제1부시장	시 장	
관 계 관 서 명	문	총무과장	내무국장		
기 안 년 월 일	1963. 7. 10	행 년월일	1963. 7. 18	보 존 년 한	
분 류 기 호	153.4	전체통제	종 결	정 서	장 6651
경 수 참 조	유신조		발 신		
제 목	보안림 지정 예정지 고시				
<p>본시 성동구 위거할 대안 (처분) 및 주위에 위치한 임야를 풍치 보안상 필요함을기 산림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 지정 예정지로 고시 고지 합니다.</p> <p>보안림 지정 예정지 고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2 호 산림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6조의 규정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 지정 예정지를 고시한다.</p> <p>1963. 7. 18. 서울특별시청 우 태 일 다 음</p>					

산림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안
림 지정 예정지를 별지와 같이 고시 하였음을 고시문
사본을 별지와 같이 추송 합니다.

우첨. 보안림 지정 예정지 고시문 사본 1통. 끝